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연병호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이 조례안은 2012년 5월 1일 정지숙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5월 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청남대 입장료 면제조문 신설과 중복 면제조항 정리 및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등 도가 주관하는 국제행사의 관람객 유치 지원을 위한 입장료 할인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 조문변경에 따른 조문변경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안 제4조제2항제5호)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안 제4조제2항제6호)
-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면제조항 신설

- 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충청도민
(안 제4조제2항제6호)

- 그 밖에 도지사가 도정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안 제4조제2항제10호)

- 충청북도가 주관하는 국제행사 등에 참석한 후 그 영수증(확인서 등)을 소지한 개인·단체가 익일까지 입장할 때 : 2천원 할인
(단, 단체입장 어린이 및 노인은 1천원 할인)
→ (안 제4조제3항제3호 신설)

4. 검토의견

금번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상위법령 조문변경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조문을 변경하고,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충청도민에 대한 면제조항을 신설하고, 충청북도가 주관하는 국제행사 등에 참석한 사람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법 개정 및 제정된 조례의 내용에 맞도록 조문을 변경·신설함으로써 조례의 내용을 더욱 충실히 하였으며, 충청북도가 주관하는 국제행사 등에 참석한 사람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충청북도가 주관하는 국제행사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이 없음.

붙임 : 충청북도청납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